

주택 단열개수 추진지침서



Ⅲ. 2001년 주택단열개수 자금지원 내용

●지원규모 : 20억원

●자금 취급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본 · 지점 및 예금취급소).

●대출지원 대상

'84. 3. 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중 2001. 1. 1이후 단열시공을 완료하였거나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리 7.5%(연체이율은 취급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출방법 : 용자 취급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 대출지원 범위

대출범위는 1주택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하되,

자재비·부자재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시공비용으로 한다.

① 지붕(천정) 및 외벽단열비용(공동주택의 경우는 외벽만 단열개수해도 무방)

② 이중창(복층유리창 포함) 이상으로써의 개수하는 비용

③ 바닥단열 · 보일러개체 및 배관공사비 (단,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보일러는 제외)

●대출절차

가. 시공전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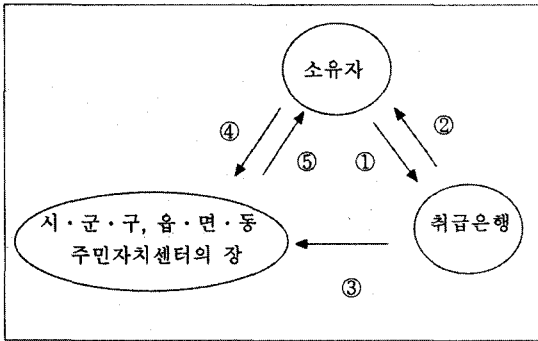
1) 대출신청 및 대출

-시공전에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주택 단열시공 계획서 (서식2호) 및 견적서를 제출(보일러 개체를 병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시공업자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첨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서식4호) 에 따라 대출금 지급일에 그 내용을 대출받는 자의 관할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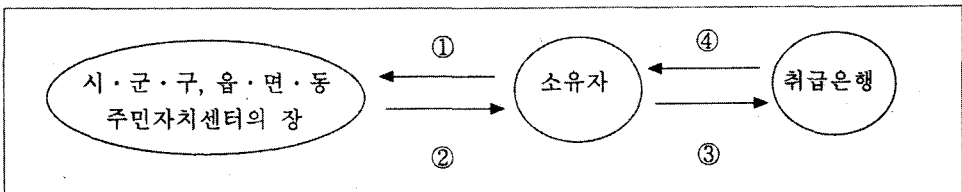
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대출신청 . 주택단열시공계획서 (서식2호) 및 견적서 첨부 제출
- ②대출
- ③ 주택단열자금 대출통보
- ④ 주택단열시공확인 신청서 제출 (서식3호)
- ⑤ 주택단열 시공확인서 (서식3호) 발급

2) 시공 및 확인

주택소유자는 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주택단열시공확



인(신청서 (서식3호)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단열시공확인신청을 받은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주택단열 시공 확인서 (서식3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시공후 대출

1) 시공확인 신청

단열 시공을 완료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단열시공확인(신청서 (서식3호) 및 견적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일러 개체를 병행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대출신청

주택단열시공확인 신청을 받은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시공사실을 조사하고 시공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단열시공확인서 (서식3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이를 대출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주택단열시공확인 신청서 (서식3호) 및 견적서 제출
- ② 주택단열 시공확인서 (서식3호) 발급
- ③ 대출신청
- ④대출

[서식 2호]

주택 단열 개수 사업 시공 계획서					
가 용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TEL)			
주택소재지			건축허가일자		
주 택 규 모	연면적		㎡	층 수	층
				평 균 층 고	㎡
단열시공일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시 공 자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	
	소 재 지			전화번호	
구 분	단열면적(㎡)	단열재 종류		단열재 규격	단열두께(mm)
	천 정				
	지 붕				
	외 벽				
	바 닷				
시 공 내 역	창 문	이중창시공면적 :		㎡	창문재 종류 :
	바 닷 온 수 배관	온수배관시공바닥면적 :		㎡	배관재 종류 :
공 내 역	보일러개체	유류용 보일러	용량 : kcal/hr (대)		
		가스용보일러	용량 : kcal/hr (대)		
		구멍탄용 보일러	용량 : 통 탄 (대)		
< 비 고 >					
1. 단열재 규격은 품질구분상의 규격으로 기재함. 2. 창문재 종류는 알루미늄샷시, 하이샷시 등으로 기재함. 3. 배관재 종류는 철파이프, 동파이프, 플라스틱파이프등으로 기재함. 4. 시공자의 공사견적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					
(이면 계속)					

다. 자금유용시 조치

- 1)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용도 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2)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주택소유자가 대출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출 취급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 4호]

주택 단열개수 사업자금 대 출 통 보 서	
채무자	채명
주소	
주택소재지	
대출추천금액	
대출액	
대출금액	
시공예정일	2001. ~ 2001.

위와 같이 주택단열자금을 대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1.

은행
농협중앙회

지점장

시·군·구·읍·면·동,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귀하

항목	금액(원)
시공비	
자재비	
부자재비	
인건비	
계	

위와같이 시공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주택소유자 (인)

시공자 (인)

확 인	경	민장	통장	사무장
	유			

위와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

시·군·구·읍·면·동,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인)